



규정

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


문서번호	TWP-C110
제정일자	2012. 07. 27.
개정일자	2018. 02. 28.
개정번호	2
페이지	1/4

목 차

- 제1장 총칙
- 제2장 조직 및 사업
- 제3장 현장실습운영위원회
- 제4장 재정
- 부칙

작성부서	현장실습지원센터	제정일자	2012. 07. 27.
------	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승 인
직 책	담 당	현장실습지원센터장	학생취업처장	기획처장	총 장
서 명					
일 자					

	규정	문서번호	TWP-C110	
		제정일자	2012. 07. 27.	
	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18. 02. 28.	
		개정번호	2	페이지

제1조(명칭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의 현장실습지원센터(이하 ‘센터’라 한다) 운영규정이라 칭한다. <개정 2018.02.28.>

제2조(목적) 센터는 산학협력중심의 취업연계형 학생 현장실습 모형 개발 및 운영, 등 현장실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센터는 현장실습지원센터장(이하 ‘센터장’이라 한다)과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.
 ②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, 센터를 대표하여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<개정 2018.02.28.>
 ③ 행정직원은 총장이 임명하며,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

제4조(직무) 센터는 현장실습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.<개정 2018.02.28.>


1. 현장실습 운영 모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현장실습 운영 시기 및 기간의 다양화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현장실습 운영 형태의 다양화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현장 실무형 현장연수제도 모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제5조(위원회 설치)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② 센터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 ③ 당연직 위원은 산학협력 중점교수 2명이며, 추천직 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단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.<개정 2018.02.28.>
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센터 행정직원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현장실습에 운영에 필요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학과(전공) 및 학부 별 현장실습 배정 및 조정·운영에 관한 사항 <개정 2018.02.28.>
3. 이 대학교의 현장실습과 관련된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<개정 2018.02.28.>

	규정	문서번호	TWP-C110	
		제정일자	2012. 07. 27.	
	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18. 02. 28.	
		개정번호	2	페이지

4. 현장실습 활성화 및 현장실습 교육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8조(수입) ①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이 대학교 지원금
2. 국가 및 공공기관의 지원금
3. 기타 수입금

제9조(지출) 센터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장실습비 등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8.02.28.>

제10조(운영세칙) <삭제 2018.02.28.>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